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		

2020년 4월 1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04. 16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4. 16. (목)	담당부서	불공정무역조사과
담당과장	조택연 과장(044-203-5880)	담 당 자	나한균 사무관(044-203-5882) 조호정 사무관(044-203-5888) 이창룡 주무관(044-203-5885)

무역위원회, 「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」 및 「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」 불공정무역행위 판정

- 제399차 무역위원회 개최('20.4.16.)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(위원장 장승화)는 '20. 4. 16.(목) 제399차 회의를 개최하여 「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」 및 「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」 조사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음

□ 이번 판정 사건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(저작권, 특허권)을 침해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사건임

○ **(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)**건의 경우, 국내 중소기업인 ㈜아이폼이 '펠트 시간표*' 저작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·판매한 국내 사업자 '가'와 '나'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음

* 펠트 재질의 틀안에 수업 과목명, 버스 또는 개구리 캐릭터 등을 부착한 학생용 시간표

○ **(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)**건의 경우, 특허 전용실시권자인 국내 중소기업인 ㈜디앤더블유가 자사의 '전기프라이팬'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 사업자 '다'와 '라'를 상대로,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면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였음

□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~9개월에 걸쳐 서면조사, 외부 전문가 감정,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,

○ **(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)**건은 피신청인 '가'가 저작권(펠트 버스 시간표, 펠트 개구리 시간표)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, 피신청인 '나'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,

○ **(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)**건은 피신청인 '다'가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 및 국내 판매하고, 피신청인 '라'는 '다'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

□ 무역위원회는 상기 2건의 피신청인들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·판매 행위 중지, 조사대상물품 재고 폐기처분,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

□ 한편, 무역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·상표권,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·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, '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'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,

○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'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'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"고 밝혔음

*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, 변호사,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% 범위 안에서 5,000만원까지 지원 가능(문의 :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(02-2124-3165))

붙임 1. 「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」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2. 「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」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붙임 1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(신청인) ㈜아이폼(대표이사 : 고성은)

○ (피신청인) 국내 사업자 가, 나

○ (조사대상물품) 펠트 시간표(펠트 버스 시간표, 펠트 개구리 시간표)

구분	신청인 제품	조사대상물품
펠트 버스 시간표		
펠트 개구리 시간표		

□ 조사 경과

○ 조사신청서 접수('19.9.9.), 조사개시결정('19.10.10.)

○ 서면조사('19.10~'20.3월), 전문가 감정('20.2월)

□ 조사 결과

○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인 '펠트 시간표'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바,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*에 해당

*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4조(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)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·판매하는 행위(제1항 제1호)

붙임 2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(신청인) ㈜디앤더블유(대표이사 : 강현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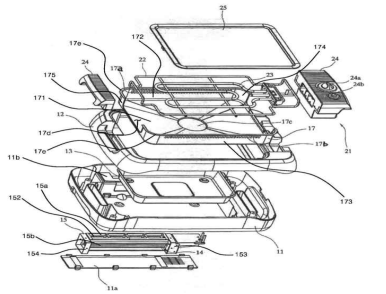
○ (피신청인) 국내 사업자 다, 라

○ (조사대상물품) 전기프라이팬

○ (특허권) 명칭은 '절전형 열산화 공기순환식 전기 프라이팬'(특허 제760790호), 구이판 상부에 에어커튼을 형성하여 구이판의 기름 및 연기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구이판이 효율적으로 가열되고 전력소모를 최소화

* (출원일) '06.12.27., (등록일) '07.09.14., (존속기간만료일) '26.12.27.

○ (신청이유) 신청인이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된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이 수입 및 국내 판매

신청인 특허	조사대상물품
	

□ 조사 경과

○ 조사신청서 접수('19.6.26.), 조사개시결정('19.7.12.)

○ 서면조사('19.7~'20.3월), 양 당사자 현지조사('19.10월)

□ 조사 결과

○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인 '전기프라이팬'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바,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*에 해당

*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4조(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)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·판매하는 행위(제1항 제1호)